

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
(구자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25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15.

발 의 자 : 구자근 · 강승규 · 김선교  
박형수 · 최수진 · 박준태  
정점식 · 김도읍 · 강명구  
이만희 · 유상범 의원  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, 여가정보 제공, 여가교육의 실시, 여가시설과 공간의 확충, 여가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여가시설, 여가프로그램 및 여가전문인력 등 여가 인프라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지역 간 여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여가정책 추진 시 지역 간 여가 격차 해소를 위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여가의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의 균형 있는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(안 제15조의2 신설).



##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의2. 지역 간 여가 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

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(지역 간 여가 격차의 해소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여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) ① (생 략)</p> <p>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8.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9. ~ 11. (생 략)</p> <p>③ ~ ⑤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7조(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8의2. 지역 간 여가 격차의 해소</u> <u>    소에 관한 사항</u></p> <p>9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15조의2(지역 간 여가 격차의 해소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여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</u></p>